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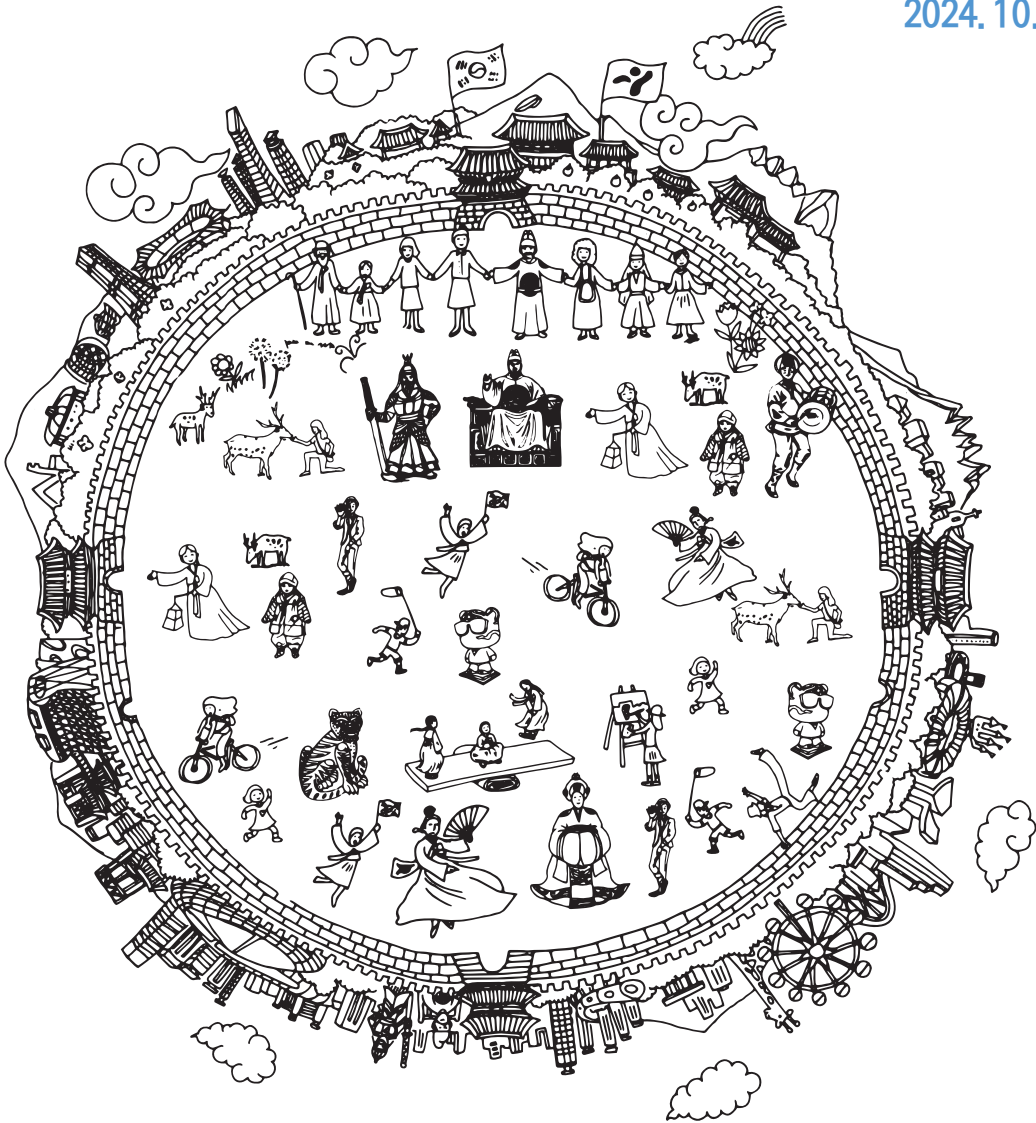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14호
2024. 10. 14.(월)



목 차**◆ 자치법규 등****[규 칙]**

제4664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66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666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9
제4667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제4668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제466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6
제467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54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4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부서)”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본청의 각 부서와 시 산하 사업소·직속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를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로,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 을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담당 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품구매와 관련이 없는 계약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 을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제품 구매촉진 담당 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공사·용역” 을 “물품구입·공사·용역” 으로 한다.

제9조 중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를 “제7조제2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회계주관부서의 장” 을 “기후환경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주관부서” 를 “각 기관(부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을 “각종”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별부서” 를 “각 기관(부서)” 으로,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을 “대해 녹색제품 구매”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 친환경성 고려 사항

- 물품이 반드시 필요한가? 구매하는 수량은 적정한가?
○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물품을 선택

☐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성 검토(나라장터 등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이트 검색)

구분	품 목				검토결과
	품 명	규 격	수량	금액 (원)	
	합 계				

※ 작성요령

- 구분란 :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 기재
- 품목란 : 물품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전 품목 기재
공사·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의뢰) 시 녹색제품이 있는 품목만 기재
- 검토결과란 :
 - 구입 가능 : 녹색제품 구입 가능으로 기재
 - 구입 불가능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근거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증빙자료 포함)

검토자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제품 심사 담당자를 현
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제품 심사 담당자 정비 및 단서 규정 신설(제7조제2항 및 제3항)
- 나. 녹색제품 심사대상 금액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제7조제4항 삭제)
- 다. 각 부서에서 소액 구매 품목에 대해 녹색제품 구매 추진(제10조제2항제2호)
- 라. 그 밖에 자구 정비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5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제3조 관련)

(단위 : 원)

분 야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비용	단위비용
1. 일반공공행정	①지방의회비	지방의원수(명)	707,054,600	113,096,222
	②일반관리비	인구수(명)	30,100,095,100	13,919
		행정구역면적(km ²)		253,784,317
2. 공공질서 및 안전	③안전관리비	사업체종사자수(명)	2,398,785,100	8,255
		세대수(세대)		5,691
3. 교육	④교육지원비	학생수(명)	3,980,034,400	365,829
4. 문화및관광	⑤문화체육비	인구수(명)	7,294,399,000	36,194
5. 환경보호	⑥환경보호비	사업체종사자수(명)	9,028,779,700	36,893
		하수도연장(m)		65,831
6. 사회복지	⑦일반복지비	세대수(세대)	368,574,300	38,411
	⑧기초생활비	저소득취약계층(명)	972,128,400	491,491
	⑨보육사업비	영유아수(명)	2,325,666,400	953,305
		공공보육시설정원(명)		4,560,164
	⑩노인복지비	노인수(명)	11,164,453,700	260,448
	⑪아동복지비	아동청소년수(명)	2,939,233,000	39,574
	⑫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수(명)	6,879,516,100	356,327
7. 보건	⑬보건위생비	인구수(명)	2,596,684,500	18,396
8.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⑭산업경제비	사업체종사자수(명)	2,579,680,500	17,509
9. 수송 및 교통	⑮도로관리비	도로시설물연장(m)	4,970,419,400	1,034,142
		도로면적(m ²)		2,240
		미개설도로면적(m ²)		4,404
	⑯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대)	1,162,397,900	5,389
10. 국토 및 지역개발	⑰지역개발비	도시계획면적(km ²)	1,918,014,900	165,162,543
		녹지대면적(m ²)		24,004
		하천연장(m)		366,967
11. 기타	⑱인건비	공무원수(명)	215,219,100	97,465,915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자치구가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예산을 고려하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되는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재산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되는 측정단위별 고정·단위비용 재산출(별표 2)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6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의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족(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장학생이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함께 전달한다.

④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이하 “유족 건강검진”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모

② 유족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③ 유족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건강검진 비용 지출 영수증 1부

제4조(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의 위로금 지원 대상자(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 ②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금액(제2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연간 지급액 (1회 지급액)	비 고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000,000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000,000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4,000,000	

[별지 제1호서식]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

장 학 생 본 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 소				
	전화번호		학생 :	보호자 :	
	학교명		학과명(대학생)	입학년도	학년
보 호 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주 소				
	장학생과의 관계				
순 직 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관할소방관서				
입 금 계 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	

- ※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순직자와의 관계	순직자의 ()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지원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순직자와의 관계	순직자의 ()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순직 공무원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목적(제1조)

나.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제2조)

다.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제3조)

라.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제4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7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용목적”을 “지원시설을 사용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조건”을 “허가 조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년층” 을 “중장년층” 으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8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단서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전시기간 30일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에 상관없이 이 조례 및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중 “공공미술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③ 건축주는 설치된 미술작품을 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를 “시 또는 자치구 인터넷”으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확인하고,”를 “확인하고, 공공미술작품 설치일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심의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철거심의 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	------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철거 사유 및 방법	철거 사유	노후화·미관저해[] 안전사고 우려[] 민원 발생[] 기타[]
	철거 방법	

철거대상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 철거작품수 점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작가동의여부		철거예정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철거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뒤 쪽)

작 품 내 용		(정면사진)
작 품 명		
작 품 중 류 (분 류)		
규 격		
재 료		
금 액	원	
<사진촬영 시 유의사항> ※ 원경, 근경, 정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작품 설명판 사진을 모두 촬영하여 작성할 것 ※ 작품 철거 사유에 해당하는 노후화, 훼손 정도 등이 나타나는 세부사진을 반드시 첨부할 것		
(원경사진)		(근경사진)
(좌측면 사진)		(우측면 사진)

(뒤 쪽)

(후면 사진)

(작품설명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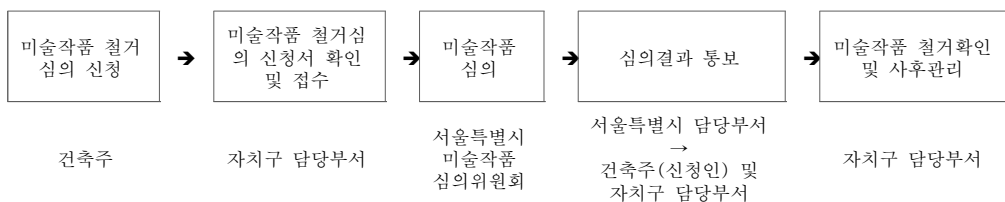
(기타 특징부 또는 작품 철거 사유에 해당하는
세부사진 추가)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건축물 미술품 철거심의 신청서 1부
 - 공동주택인 경우, 미술품 철거 관련 입주자 등의 동의서 등 각 1부
 - 집합건축물인 경우, 관리위원회의 미술품 철거 의결서 등 각 1부

건축물 미술품 처리절차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3. 12. 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미술품 철거심의를 위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물 미술품 철거심의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 신설(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 나. 변경된 조항 순서에 따라 별지 서식 제목 수정(별지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 다. 위원회 등 약칭 추가(제2조, 제5조, 제8조)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6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현황
2. 토양의 불투수 포장 현황
3. 현존 식생현황
4. 비오톱유형 현황
5. 비오톱유형 평가결과

6. 개별비오톱 평가결과
7.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결과를 도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조사원 구성 및 자격
 2. 조사 방법
 3. 조사원증의 발급
 4.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
 5. 비오톱(도시생태현황) 보전가치 등급 및 등급산정 방법
 6. 조사자료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방법
-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4)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제4조(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개발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한다.
- ③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결과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도시생태현황도 정비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도 수시 정비 및 관리 등) ① 비오톱1등급 등의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거

나 비오톱등급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 2회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오톱 등급 재조사 등을 통해 비오톱1등급에서 등급이 변경 결정된 필지에 대하여 연속지적도에 변경된 비오톱1등급 부분을 명시한 도면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성 검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연 및 생활환경,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성 검토 및 생태면적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사업구역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이상)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제한) ① 시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전까지 법 제6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조례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6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제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결정할 때는 「건축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①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영 제30조의 용도지역 세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이하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라 한다)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나. 허용용적률: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2/3 이내. 이 경우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이란 변경 후 용도지역의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이하 같다).

다. 상한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용적률을 가산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거나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나. 허용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2항제2호,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의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

3. 기존의 용도지역이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변경된 경우

가. 기준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

나. 허용용적률: 조례 제48조, 제49조제2항제2호, 제49조제3항,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 이내

다. 상한용적률: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허용용적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2. 상한용적률: 제1호에 따라 산정된 허용용적률에 다음 각 목을 더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내
가. 법 및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대한도 (제1항제1호인 경우 허용용적률)×인센티브계수×가중치× α 이내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최대한도×법 또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완화 비율 이내

다. 가목의 인센티브계수, 가중치, α 는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계수: 1.3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계수

2)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 비율

3) α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영 제30조 각 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 용도지역 상향 시 제공된 공공시설등의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가 공공시설등의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건축물 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1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인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2. 조례 제30조 및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12조(불법 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해제) 구청장은 조례 별표 1 제1호라목(2)(마)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立木)이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명시에 해제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입목축적 조사방법)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3)(가)에서 정한 입목축적 조사 및 산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르되 입목축적 비율 산출

은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① 조례 별표 1 제2호가목(3)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생태면적률 산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보고 및 통보)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사항을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준공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를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7조(평균층수의 산정) ① 조례 별표 5 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 조례 별표 5에 따른 평균층수는 소숫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제18조(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 조례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은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2.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9조(서울도심의 범역 확정 등) 조례 제47조제2항제1호, 제48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각의 단서 및 조례 별표 16 제2호나목 내의 서울도심의 범역은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표 5에서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0조(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① 조례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제6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1조(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 조례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5.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인사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7.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위촉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안건의 상정 등)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목록을 통보하고, 7일 전까지 세부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소집 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첫번째 및 세번째 수요일에, 시공동위원회는 매월 두번째 및 네번째 수요일에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회의출석)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출석상황을 연 1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진행 등)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의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9조제2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입안권자에게 신청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치구 공무원이나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설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참고인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① 속기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속기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회의내용과 속기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결과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60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

제29조(시공동위원회의 운영)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시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제7장 의회 의견청취

제30조(의회 의견청취) 시장은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시장에게 결정 신청한 도시계획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1호나목 규정은 종전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602호) 시행일(2008. 1. 31.) 이후 영 제30조 각 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종전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638호) 시행일(2008. 11. 13.) 이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7조 관련)

1. 원칙 :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5 이상인 경우
 - 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 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가. 2004.9.6 이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 중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사업구역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부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함되는 부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공급되는 주택 전체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마.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100분의 20 이하이거나, 사업구역 면적 대비 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합계가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바. 그 밖에 시장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 기준
 - 가.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철거 신고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및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은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 제1호 및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할 때 기존 건축물 전체가 주거 이외의 용도인

경우에는 동수 및 경과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시점(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일 또는 허가·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거 용도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 본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대수 이상의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마.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건축물 동수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한다.

[별표 2]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제12조 관련)

1. 토지소유자 등이 원상회복 계획서, 복구 계획도면, 공사비 산출액 등을 작성 제출한 경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단, 아래의 복원방법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입목 훼손의 경우

(1) 복원방법

- (가)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나) 식재 후 3년 이상의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 (다) 활착된 입목축적을 측정하여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2) 식재한 입목의 관리

- (가)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기술자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 (나) 제출된 생육상태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에 그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3) 식재할 입목은 산림청에서 정한 조림 권장수종 중 용재수종으로 하되, 도시생태현황도의 현존식생도를 참조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으로 하며, 가슴높이 지름 6cm 이상의 입목을 식재해야 한다. 이때 식재한 입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로 보지 아니한다.

나.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 복원방법

- (가) 훼손 전 경사도의 110퍼센트 이상을 성·절토 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 전 경사도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 (나) 복구 후 3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5퍼센트 이상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훼손된 성·절토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성·절토하여 복원할 수 있다.

- (2) 토지소유자 등은 성·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3) 암반 훼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해제할 수 없다.

다. 무단으로 포장 또는 공작물을 설치했을 경우도 원상복구 되었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

2. 복원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사고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별표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제13조 관련)

1. 입목축적 비율의 정의

개발대상 필지의 입목에 대한 수종, 수고, 가슴높이직경, 본수를 ha당 조사결과로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평균입목축적(m³)적용 시 비율(100분율)로 산정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산출

가. 대상지 입목축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나. 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대상지 입목축적을 ha당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면 ‘대상지 ha당 입목축적’ 이 된다.

3.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평균성장률 적용)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산출한다.

4. 입목축적 비율 산출

$$\text{입목축적 비율} = \frac{\text{대상지 ha당 입목축적}}{\text{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times 100$$

[예 시]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 산출방법 예시(평균성장률 적용)

- 2021.9.30.~12.31.까지:148.97m³/ha(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을 그대로 적용)
- 2022년:148.97m³/ha+(148.97m³/ha×2.3%)=152.40m³/ha
- 2023년:152.40m³/ha+(152.40m³/ha×2.3%)=155.91m³/ha
- 2024년:155.91m³/ha+(155.91m³/ha×2.3%)=159.50m³/ha
- 2025년:159.50m³/ha+(159.50m³/ha×2.3%)=163.17m³/ha
- 2026년:163.17m³/ha+(163.17m³/ha×2.3%)=166.92m³/ha

※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 산출결과 값이 소수점 셋째자리 이상일 경우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로 결정

[별표 4]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제14조제1항)

1. 생태면적률 계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 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 \frac{\sum(\text{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sum(\text{식재유형별 환산면적})}{\text{전체면적}}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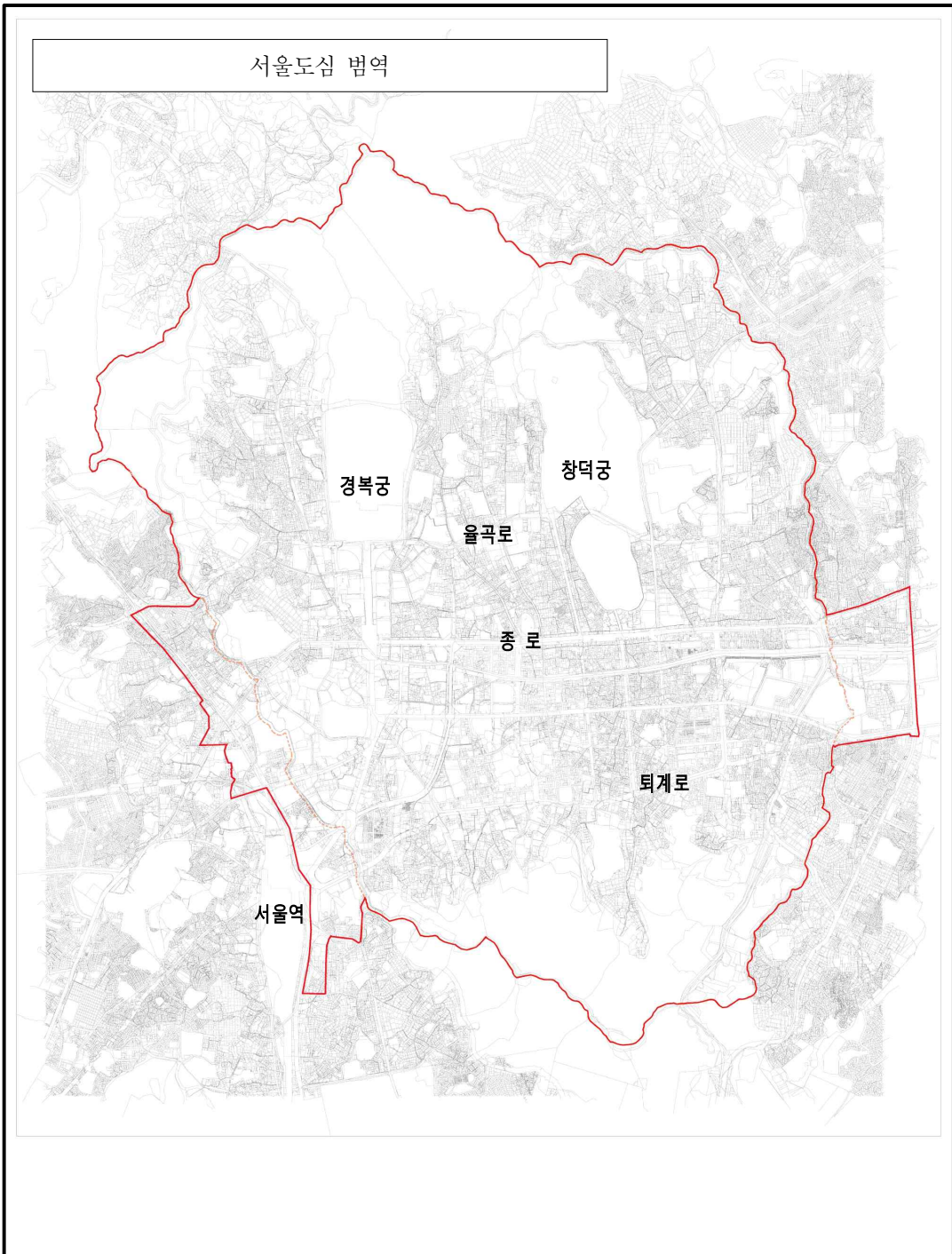
2. 생태면적률 계산을 위한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피복유형		가중치		세부기준	비고	
1	자연지반 녹지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생체류지	1.2	자연지반녹지내 식생체류지 설치 부분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차수시설	0.5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처리 된 수공간		
3	인공지반 녹지	토심≥90cm	0.7	인공지반 상부 녹지 조성 (최소토심 45cm 이상)	인공지반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 토심에 따른 인공지반 가중치를 해당 공간유형별 가중치에 곱하여 산정	
		45cm≤토심<90cm	0.6			
4	옥상녹화	토심≥90cm	0.7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최소토심 20cm 이상)		
		45cm≤토심<90cm	0.6			
		20cm≤토심<45cm	0.4			
5	투수포장	식재비율≥30%	0.4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이상인 부분 포장면		
		식재비율<30%	0.2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단위면적당 식재면적 비율이 30% 미만인 부분 포장면으로 포장재(한 변의 길이는 500mm 이하) 간 간격은 최소 10mm 이상의 틈새 확보		
		미식재	0.2	자연지반 상부 식재와 연계하지 않고 포장재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투수성 포장면으로 투수계수 0.5mm/sec(서울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결과 2등급) 이상의 포장재 사용 또는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		
6	벽면녹화		0.3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 녹화로 최소 토심은 20cm 이상(단, 등반형 벽면녹화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 산정)		
7	옥상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	누적유출고 5mm 이상 처리하는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		

식재유형	개체당 환산 면적	가중치	세부기준	비 고
$0.3 \leq H < 1.5$	0.1㎡/주수	0.1	지피초화류의 경우 0.3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체로 인정하지 않음	관목류
$1.5 \leq H < 4.0$	0.3㎡/주수	0.1	관목류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50%만 인정	대관목류 및 소교목류
$H \geq 4.0$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 \geq 5\text{cm}$ 또는 $R \geq 6\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0.8\text{m}$ 인 경우 교목을 1주 인정	대교목류로서 조정기준 (국토부고시) 제7조2항의 각호에 의하여 인정 주수를 산출 후 가중치를 곱하 여 산정
			낙엽교목으로 $B \geq 12\text{cm}$ 또는 $R \geq 15\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2\text{m}$ 인 경우 교목을 2주 인정	
$H \geq 5.0$	3㎡/주수	0.1	낙엽교목으로 $B \geq 18\text{cm}$ 또는 $R \geq 20\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3\text{m}$ 인 경우 교목을 4주 인정	보존수목일 경우 가중치 0.15 대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개체당 환산면적의 10%(0.3㎡)만 인정
			낙엽교목으로 $B \geq 25\text{cm}$ 또는 $R \geq 30\text{cm}$ 이거나, 상록교목으로 $W \geq 5\text{m}$ 인 경우 교목을 8주 인정	

(H : 수고, B : 흉고직경, R : 근원직경, W : 수관폭)

[별표 5] 서울도심 범역 확정 도면(제1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단위 : m²)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장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단위 : m^2)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생태면적률 산정표

생태면적률 산정표							
□ 대상시설물 개요							
사업명(대상지)							
대상토지	대지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생태면적률 산출							
피복유형			가중치	실면적(㎡)	환산면적(㎡)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	1.00				
		식생체류지	1.20				
2	수공간	투수가능	1.00			자연지반	
		차수	0.50				
3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 이상	0.70				
		45cm ≤ 토심 < 90cm	0.60				
		식생체류지	0.84			인공지반(≥90)	
4	옥상녹화	토심 90cm 이상	0.70				
		45cm ≤ 토심 < 90cm	0.60				
		20cm ≤ 토심 < 45cm	0.40				
5	투수포장	식재 ≥ 30%	0.40			자연지반	
			0.28			인공지반(≥90)	
			0.24			인공지반(<90)	
		식재 < 30%	0.20			자연지반	
			0.14			인공지반(≥90)	
			0.12			인공지반(<90)	
			식재미포함	0.20			자연지반
				0.14			인공지반(≥90)
0.12			인공지반(<90)				
6			벽면녹화	0.30			
7			옥상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10			
소 계(피복유형)							
식재유형		개 체 당 환산면적	가중치	수목수량 (주수)	환산면적(㎡)	비 고	
8	0.3m ≤ H < 1.5m		0.1㎡/주수	0.10			
	1.5m ≤ H < 4.0m		0.3㎡/주수	0.10			
	H ≥ 4.0m	B ≥ 5, R ≥ 6, W ≥ 0.8	3㎡/주수	0.10			
		B ≥ 12, R ≥ 15, W ≥ 2	6㎡/주수	0.10			
	H ≥ 5.0m	B ≥ 18, R ≥ 20, W ≥ 3	12㎡/주수	0.10			
		B ≥ 25, R ≥ 30, W ≥ 5	24㎡/주수	0.10			
	H ≥ 4.0m (보존수목)	B ≥ 5, R ≥ 6, W ≥ 0.8	3㎡/주수	0.15			
		B ≥ 12, R ≥ 15, W ≥ 2	6㎡/주수	0.15			
	H ≥ 5.0m (보존수목)	B ≥ 18, R ≥ 20, W ≥ 3	12㎡/주수	0.15			
		B ≥ 25, R ≥ 30, W ≥ 5	24㎡/주수	0.15			
소 계(식재유형)							
합 계			Σ(피복유형별 환산면적) + Σ(식재유형별 환산면적)				
생태면적률(%)			환산면적/대지면적 × 100 = %				
비고							
1. 생태면적도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이 구분되도록 작성한다.(인공지반 지하공간선 표시 등)							

[별지 제4호서식] 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별지 제6호서식] 상정안건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20 . . .
년 월 일	(제 호)

의
결
사
항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 .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2. 제안이유 (입안취지)

3. 도시계획사항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도시계획안 :
- 일자 및 게재신문 :
- 의견청취기간 :
- 공람장소 :

나. 의견접수사항 :

5.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7.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No.	
-----	--

안 건 명				관 련 사 항
심 의 요 지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m²)	
상 정 사 유				

(도 면)

용지규격 : B4 규격

[별지 제7호서식] 서명부

서 명 부

☐ 제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서명

위 원 성 명	서	명	위 원 성 명	서	명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속기사용)

서 약 서

본인은 속기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속 기사

서약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위원용)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위원

서약자 : ○ ○ ○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도시생태현황도 및 생태면적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
- 나. 삭제조문 및 가지번호 정리에 따른 조문번호 일괄 조정
- 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상한용적률의 정의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기준 변경
- 라.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시 공고 및 고시 세부방법 규정
- 마. 환경성 검토 및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 근거 신설과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및 산정표 변경
- 바. 띄어쓰기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를 “뜻은 다음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공간본부장” 을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 을 “청산을 주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환지예정지” 를 “환지 예정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청산시” 를 “사전청산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일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제2항” 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법 제37조” 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 을 “환지 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 으로,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시” 를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 로, “효력은” 을 “효력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 을 “작성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청산시 시장” 을 “사전청산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 중 “환지처분후” 를 “환지처분 후” 로 한다.

제7조 중 “수인” 을 “여러 사람” 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청산시” 를 “청산 시” 로, “청산 대상자” 를 “청산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지처분시” 를 “환지처분 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토지 소유자 등” 을 “토지소유자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산금상계신청서에 의하고” 를 “토지소유자등이 별지 제5호서식의 청산금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도시정비과장은 상계청산 처리내역을” 로, “청산금상계처리색인대장에” 를 “청산금 상계처리 색인대장에” 로 한다.

제10조 중 “법령 상 재산관리를 위임받” 을 “법령상 재산관리 위임을 받” 으로 한다.

제11조 중 “징수코자 할 경우에는” 을 “징수할 때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7호서식” 을 “별지 제8호서식” 으로, “납입필통지서” 를 “납입확인통지서” 로, “증환지된” 을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된”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작성 송부” 를 “작성 및 송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청산금 납기 전 고지서 발행대장 및 징수부를 작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대상이 다량일” 을 “고지 대상이 많을”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송부된” 을 “송부한” 으로, “공시송달 하여야” 를 “공시송달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공고 만” 을 “게시공고만” 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경우”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을 “토지소유자등이 확인되지 않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계청산 시 발생하는 징수청산금인 경우

제17조제1항 중 “납입통지서” 를 “납입확인통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하고자 할” 을 “징수할” 로, “청산금납기전고지서발행대장” 을 “청산금 납기 전 고지서 발행대장”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도의 징수청산금)” 을 “(사설 도로의 징수청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할” 을 “않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으로, “사도권리 포기신청서” 를 “사도 권리포기 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리된” 을 “접수된” 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납입필 통지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되면” 을 “금융기관이 납입확인통지서를 송부하면” 으로, “소인” 을 “소인(消印)”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납기 내에” 를 “납부기한까지” 로, “납기를 붙인 별지 제11호서식의” 를 “납부기한을 붙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완납치” 를 “완납하지”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의 최고장” 을 “최고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치 아니한” 을 “납부하지 않은” 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송달 불능분은” 을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통” 을 “한 부”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며” 를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을 “경우” 로, “양수자가” 를 “양수자는” 으로 한다.

2. 청구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한 부

제24조 중 “교부키” 를 각각 “교부하기”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부시” 를 “교부 시”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4조 본문 또는 단서의 규정” 을 “제24조”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따라 합병환지할 때는” 으로, “청산가격에 의하여” 를 “청산가격으로” 로 한다.

제27조 중 “작성” 을 “작성하고” 로 한다.

제28조 중 “토지 중 소유가 국공유” 를 “토지가 국유·공유”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시관리과” 를 “도시정비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납입필통지서” 를 “납입확인통지서”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를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납기전” 을 “납기 전”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인감증명서 1통” 을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 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장” 을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서명 또는 인)” 을 각각 “(서명)” 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감증명서 각 1통” 을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부”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인수받았을” 을 “인수할”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		<뒷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원부			
연도 :	지구	수납번호	
		납 입 금 액	
성명 : 환지 : 주소 :		원	
수 납 일 부 인			
○ 징수청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 연 10%의 이자를 가산징수합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처분비를 가산징수합니다. 3) 새로운 환지지번으로 등기축탁이 보류되어 권리행사(소유권이전등)가 제한됩니다. 4) 도시개발사업 종결이 체납기간만큼 지연됩니다.			
< 수납은행 보관용 >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청산금 원금			
연도 :	지구	수납번호	
		납 입 금 액	
성명 : 환지 : 주소 :		원	
수 납 일 부 인			
		※ 청산금 납부 시 ○ 문의할 곳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등기축탁을 해드립니다.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추징) 영수증

원 부			과 오 납 금 반 환(추 징) 통 지			과 오 납 금 반 환(추 징) 통 보		
제 호	년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회계 분임징수관 주관	제 호	년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회계 분임징수관 주관	제 호	년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회계 분임징수관 주관
채 주			채 주			채 주		
— 금			— 금			— 금		
단			단			단		
년 월 일 발행			위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채주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위 금액을 채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직			직		
			서울특별시균형발전본부분임징수관 성명 (인)			서울특별시균형발전본부분임징수관 성명 (인)		
징수관		작성자						
관	항	목						
			금고귀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 과 통보용)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제도 축소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인감증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산금 교부 시 수령자의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교체(제22조,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4호서식)
- 나. 별지 서식 내 ‘서명 또는 인’을 ‘서명’으로 변경(별지 제5호서식,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및 제18호서식)
- 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현행화(제3조, 별지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7호서식)
- 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